

의안번호	제 328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345 회)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1월 1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28
----------	-----

제출연월일 : 2016년 1월 1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강화 등을 통한 원활한 국·도정 업무 추진을 위함

##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충청북도 이·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등
- 정의(안 제2조) 이·통장 및 활성화 단체 등에 대한 정의 등
- 사업의 범위(안 제3조) 도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 3. 의안전문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5.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충청북도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이·통장”이란 충청북도내 각 시·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
- 2.“이·통장활동 활성화 단체”란 이·통장활동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2. 이·통장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이·통장활동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활성화단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통장
2. 그 밖에 이·통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통장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부칙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충청북도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 지원

## 3. 관련조문

- 사업의 범위(안 제3조 2항 및 3항)
  -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이·통장 활동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나. 추계 결과 : 역량강화 사업 50,000천원, 사기진작 사업 5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출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역량강화 사업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사기진작 사업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 성 업